

건강한 금융생활정보 가이드

2020-01호

01_금융거래 종합보고서

03_신용 • 체크 카드를 알뜰하게 사용하는 방법



1 금융거래종합보고서란?



개인고객이 한 해 동안 은행과 거래한 내역 전반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로, 예금·대출 현황, 수수료 발생 및 면제 내역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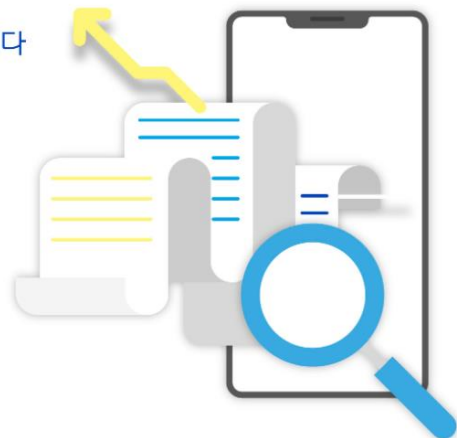
금융거래종합보고서 내용

예금·대출 현황	예금이자 발생	대출이자 납부	대출금 상환	자동이체 등록	수수료발생·면제내역
----------	---------	---------	--------	---------	------------

* 금융거래종합보고서는 은행별로 제공되며,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

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통해서 본인의 **금융자산 및 부채 현황을 파악**하고, 1년 동안 **해당 은행과 거래하면서 받은 혜택과 지불한 비용을 직접 비교**하실 수 있습니다

이를 통해 대출감축, 수수료우대 금융상품 가입 등 **금융자산 관리 및 은행과의 거래 관계 유지·변경 여부 판단** 시에 **활용**하실 수 있습니다



2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?

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·모바일뱅킹에 접속해
‘금융거래종합보고서’ 서비스를 신청하면,
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



은행별 조회채널 및 조회방법(채널, 화면 메뉴)

은행	조회채널	조회 방법 (화면 메뉴)
국민	인터넷뱅킹	인터넷뱅킹 로그인 > 고객센터 > 금융서비스 > 기타금융서비스 > 금융거래 종합보고서모바일뱅킹
	모바일뱅킹	모바일뱅킹 로그인 > 고객센터 > 금융거래 종합보고서인터넷뱅킹
신한	인터넷뱅킹	인터넷뱅킹 로그인 > 개인 > 부가서비스 > 금융거래종합보고서인터넷뱅킹
우리	인터넷뱅킹	인터넷뱅킹 로그인 > 나만의 은행 > 금융거래종합보고서모바일뱅킹
하나	인터넷뱅킹	인터넷뱅킹 로그인 > 마이하나 > 증명서발급 > 금융거래종합보고서 인터넷뱅킹
SC	인터넷뱅킹	인터넷뱅킹 로그인 > 서비스 및 설정 > 금융거래종합보고서인터넷뱅킹
citi	인터넷뱅킹	인터넷뱅킹 로그인 > 설정 버튼 > 개인정보관리 > 금융거래종합보고서 인터넷뱅킹
	모바일뱅킹	모바일뱅킹 로그인 > 메뉴 박스 > 고객센터 > 금융거래종합보고서인터넷뱅킹
경남	인터넷뱅킹	인터넷뱅킹 로그인 > 개인뱅킹 > MY BANKING > 금융거래종합보고서 조회인터넷뱅킹
부산	인터넷뱅킹	인터넷뱅킹 로그인 > 뱅킹관리 > 금융거래종합보고서 조회모바일뱅킹
대구	인터넷뱅킹	인터넷뱅킹로그인 > 종합정보관리 > 제증명관리 > 증명서출력 > 금융거래종합보고서 발급
전북	인터넷뱅킹	인터넷뱅킹 로그인 > 조회 > 금융거래종합보고서
광주	인터넷뱅킹	인터넷뱅킹 로그인 > 부가서비스 > 기타서비스 > 금융거래종합보고서
제주	인터넷뱅킹	인터넷뱅킹 로그인 > 예금/펀드조회 > 금융거래 종합보고서조회
수협	인터넷뱅킹	인터넷뱅킹 로그인 > My정보 > 고객정보관리 > 금융거래종합보고서
농협	인터넷뱅킹	인터넷뱅킹 로그인 > 뱅킹관리 > 증명서 > 금융거래 종합보고서 > 금융거래 종합보고서 조회(은행)
기업	인터넷뱅킹	인터넷뱅킹 로그인 > 조회 > 금융거래종합보고서 조회
산업	인터넷뱅킹	인터넷뱅킹 로그인 > 개인뱅킹 > 금융소득조회/종합보고서 > 금융거래종합보고서
	인터넷뱅킹	인터넷뱅킹 로그인 > 뱅킹관리 > 금융거래종합보고서 조회
케이	인터넷뱅킹	인터넷뱅킹 로그인 > 뱅킹관리 > 금융거래종합보고서 조회
	모바일뱅킹	인터넷뱅킹 로그인 > 뱅킹관리 > 금융거래종합보고서 조회
카카오	모바일뱅킹	모바일뱅킹 로그인 > 고객센터 > 고객센터 > 증명서 발급 > 금융거래종합보고서

※ 2020.1.17.기준이며, 개인고객이 없는 수출입은행은 제외

신용·체크카드를 알뜰하게 사용하는 5가지 방법!

- 1 본인의 금년 1~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 미리 점검하기
- 2 본인에게 맞는 신용·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 찾기
- 3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활용하기
- 4 신용카드로 거래 전에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기
- 5 맞벌이 부부는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기

※ '19년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현행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, 법 개정에 따라 추후 내용이 바뀔 수 있음

1 본인의 금년 1~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 미리 점검하기



신용카드등(체크카드, 선불카드, 현금영수증 등 포함)으로 사용한 금액이 **연간 총급여액의 25% 초과**하는 경우, 그 **초과 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(15~30%)**을 연간 **300만원 한도**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이에 따라 소비자는 1~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(이하 '신용카드 사용금액')을 국세청의 "**연말정산 미리보기**" (www.hometax.go.kr)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, **나머지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**할 수 있습니다.

2 본인에게 맞는 신용·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 찾기



소득공제율만 고려하면 공제율이 높은 **체크카드**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*

* 신용카드 15%,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30%

그러나, 연회비를 부담하는 **신용카드**의 경우 통상 체크카드보다 **부가서비스 혜택**이 많고, 신용카드등 소득공제(이하 ‘신용카드 소득공제’)에는 **최저사용금액**(충급여액의 25%)과 **최대공제한도액**(충급여액이 7,000만원 이하시, 300만원)이 있는 만큼

본인에게 맞는 **신용·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**을 찾아 사용하면 경제적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.

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황금비율

신용카드 사용금액	결제 수단	비고
최저사용금액 미달	신용카드 유리	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고려 필요
최대공제한도액 초과		
최저사용금액~최대공제한도액	체크카드 유리	연말정산 소득공제 고려 필요

신용카드

- ✓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**최저사용금액**(충급여액의 25%)에 미치지 못하였거나
- ✓ **최대공제한도액**(충급여액 7,000만원 이하시, 300만원)을 초과



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등 부가서비스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!

체크카드

- ✓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**최저사용금액**(충급여액의 25%)을 초과하고 **최대공제한도액**(충급여액 7,000만원 이하시, 300만원) 이내



통상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해요! (연말정산 소득공제 고려)

신용 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는 방법

3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활용하기

대중교통 요금, 전통시장 이용액, 도서·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

추가공제 대상 및 공제율

추가공제 대상	소득공제율*
대중교통 요금	40%
전통시장 이용액	40%
도서·공연비 등(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)	30%

* 신용카드 15%,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30%

또한,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, 의료비 등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.

중복공제 대상

구분	특별 세액공제	신용카드등 공제
의료비	의료비 세액공제 가능	가능
취학전 아동 학원비	교육비 세액공제 가능	가능
교복 구입비	교육비 세액공제 가능	가능

4 신용카드로 거래 전에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기

신차 구입비용(단,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공제 대상), 통신비, 세금과 공과금, 아파트관리비, 자동차 리스료,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, 현금서비스 등은 **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**됩니다.



신용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는 방법

5 맞벌이 부부는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기

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으므로,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부부 중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


신용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는 방법

예시

A 부부	B 부부
총급여액 8,000만원	총급여액 8,000만원
카드사용금액 2,600만원	카드사용금액 2,600만원

➔ A부부, B부부의 연봉(총급여액), 카드사용금액이 동일하더라도 남편의 카드를 집중 사용한 A부부는 남편과 아내가 각각 카드를 사용한 B부부보다 약 16만원 많은 세금절감 효과를 누림

신용카드 소득공제 사례

구분	A부부			B부부		
	남편	아내	계	남편	아내	계
총급여액	4,000	4,000	8,000	4,000	4,000	8,000
신용카드*	900	900	1,800	1,500	300	1,800
체크카드*	400	400	800	700	100	800
소득공제액**	90	90	180	285	-	285
절세액***	13.5	13.5	27	42.8	-	42.8

*신용카드,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 사용액

**최저사용금액인 1,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신용카드는 15%, 체크카드는 30%를 곱하여 계산 (추가공제는 비교편의상 고려하지 않음)

***절세액은 소득공제액에 한계세율 15%를 곱하여 계산(1,200만원~4,600만원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15%세율 적용)